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가단12315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유한회사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성태, 박관우, 박수빈, 박태범, 전세영, 최진규

변론 종결 2023. 1. 12.

판결 선고 2023.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은 금 21,719,02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719,027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1. 4. 19.경 주식회사 D의 C에 대한 아래 채권을 양수하였다.

직장인신용대출	2013. 5. 14.	90,000,000	2018. 5. 14.	연 16.9%
---------	--------------	------------	--------------	---------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38235 대여금 등

채권자 주식회사 D

채무자 C

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2. 채무자는 채권자에데 74,458,972원 및 그 중 50,327,333원에 대하여는 2016.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9%의, 12,773,086원에 대하여는 2016.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4%의, 8,999,067원에 대하여는 2016.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8%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E의 소유였는데, E은 2017. 7. 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F, 자녀인 G, H, I, C, 피고가 있었다. 위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분할 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7. 8. 30. 접수 제40938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4. 10. 8. 접수 제45322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J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은 2021.

3. 3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2017. 7. 9. 기준 238,805,220원, 2022. 8. 16. 기준 271,173,68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 지분(2/13)을 피고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기하여 이전한 것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상속지분 가액상당액인 21,719,0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2014. 10. 10. E의 명의로 99,883,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C은 위 대출 원리금 중 17,99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가 나머지 돈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C이 취득한 금액이 상속분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여, C에게 더는 상속분이 남아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박성인

별지